

## 18세기 영주 濟民樓 소속 노비의 모습

김 영 나\*

- |                  |                      |
|------------------|----------------------|
| I. 머리말           | IV. 의국 소속 노비의 규모와 나이 |
| II. 『醫局奴婢案』의 구성  | V. 혼인과 가족 구성         |
| III. 제민루의 성립과 역할 | VI. 거주 지역의 양상        |
|                  | VII. 맺음말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영주의 지방 의원인 제민루에 소속된 노비들의 정보가 담긴 『醫局奴婢案』을 이용하여 노비의 여러 모습을 밝히고자 하였다.

1728년에는 45명, 1774년에는 46명, 1785년에는 59명의 노비가 있었다. 노비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신공을 내는 壯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노비의 혼인은 대부분 婢와 미상의 혼인이었고, 奴와 良女의 혼인은 각 노비안에 1건씩 있었다.

제민루 소속 노비는 누군가에게 상속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영주를 비롯하여 영양·봉화·순흥·안동·풍기 등의 경상도 북부와 강원도 영월 등에 거주하였는데, 영월에 많이 거주한 이유는 약재의 조달을 위해서였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BK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 ynkim@knu.ac.kr

제민루 노비의 규모와 나이, 혼인과 가족,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국 노비의 존재양상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가족의 모습은 공노비와, 노비 매매의 모습은 사노비와 비슷하였다. 따라서 의국 소속 노비는 공노비의 성격과 사노비의 성격을 함께 가진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주제어

---

濟民樓, 노비, 醫局奴婢案, 혼인, 가족, 거주 지역

## I. 머리말

영주의 의원 濟民樓는 1433년(세종 15) 영주군수 潘渚가 1371년(공민왕 20) 河崙이 건립한 향교를 다시 중수하면서 건립되었다. 처음에는 의학을 위해 세운 기관이었지만, 이후에는 유생들이 공부하는 장소나 고을의 노인들이 모여 강론하며 신의를 다지는 곳이 되었다.<sup>1)</sup> 또한 처음에는 약재를 햇볕에 말리기 위해 설치했는데 후에는 놀고 시를 읊조리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였다.<sup>2)</sup> 따라서 제민루는 원래 의원으로 건립되었고, 상황에 따라 지방 사족들의 모임이나 공부 장소로 이용되었다.

조선의 지방 의료에 대해서, 사족의 일기자료를 이용하여 의료 활동을 파악한 연구<sup>3)</sup>, 의관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사건을 기록한 醫案類 등을 이용한 연구<sup>4)</sup>, 조선후기 私的 醫療의 성장과 관련한 연구 등이 있다.<sup>5)</sup> 또한 存愛院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설치의 배경과 의의, 활동, 관 주도의 의료체계에서 사족 중심의 의료체계로의 변화양상 등을 밝혔다.<sup>6)</sup>

영주의 제민루는 존애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지만, 존애원과는 달리

- 
- 1) 동양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역, 『(國譯)榮州三邑誌-榮川편-』, 소수박물관, 2012, 120쪽(취사편). “蓋爲醫學而設也, 後儒生夏課居接, 歲以爲常, 今爲鄉老講信之所.”
  - 2) 앞의 책, 234쪽(학사편). “初爲曬乾藥材以設, 後來專爲遊詠之所.”
  - 3) 신동원, 「조선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미암일기』, 『쇄미록』, 『이재난고』, 『흥영』의 비교 분석」, 『역사비평』 75, 역사문제연구소, 2006(b); 김성수, 「18세기 후반 의학계의 변화상: 『欽英』으로 본 조선후기 의학」, 『한국문화』 6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등.
  - 4) 이기복, 「의원의 서사로 본 조선 후기 의료의 사회문화적 풍경」, 『한국문화』 9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5) 신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 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강릉 약계(1603~1842)의 조직과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5, 한국사연구회, 2006; 임호민, 「조선시대 향촌조직 결성의 양상과 추이 고찰-강릉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사학』 27, 강원사학회, 2015 등.
  - 6) 權泰乙·金基卓·金子相·韓基汶 공저, 『조선최초사설의료원 存愛院』, 문창사, 2005; 權泰乙·姜慶模, 『存愛院誌』, 문창사, 2007; 우인수,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료 기능」, 『대구사학』 104, 대구사학회, 2011; 김형수, 「임란직후 상주 지역질서의 재편과 存愛院」, 『국학연구』 30, 한국국학진흥원, 2016.

공적인 의료기관이었다. 제민루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단지 16~17세기 조선의 지방 의국 운영을 제민루를 통해 살펴본 연구만 있다. 여기에서는 제민루를 조선 最古의 지방 의국으로 보았고, 제민루에서 관리하던 토지와 의서, 의약도구나 문서철 등 다양한 물건에 대한 기록인 「醫院雜物秩」을 통해 제민루의 운영을 살펴보았다.<sup>7)</sup>

제민루보존회에서는 제민루와 관련된 사료들을 소수박물관에 기탁하였고, 이 사료들을 중심으로 『濟民樓誌』<sup>8)</sup>가 편찬되었다. 여기에는 제민루와 관련된 記·序·跋 및 향서당과 관련된 사료, 詩文 등이 번역되어 있고, 「醫院接錄」, 「醫局錦衣錄」, 「醫院雜物秩」, 「醫局奴婢案」, 「鄉座錄」, 乾坤, 「濟民樓懸板膽載帖」, 「濟民樓任案」, 「鄉座錄」 6책, 「鄉座錄」 首卷, 「鄉中座目」, 「題名錄」, 「敬老所膽錄」의 원본이 실렸다.

여기에서는 『濟民樓誌』의 자료 중 노비에 대한 기록인 「의국노비안」을 통해 의원에 소속된 노비들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 노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일기자료와 호적자료, 노비에 대한 각종 장부들, 법전 등을 통해 조선시대 노비의 실상에 대해 파악하였고, 최근에는 공노비·사노비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서원노비와 교노비, 역노비, 성균관 노비 등을 연구한 성과도 있었다.<sup>9)</sup> 그러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노비들, 특히 지방 의원에 소속된 노비에 대한 연구는 남

7) 김호, 「16~17세기 조선의 지방 醫局 운영-경북 영주의 濟民樓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7, 한국국학진흥원, 2018.

8) 제민루보존회, 『濟民樓誌』, 느티나무, 1996.

9) 최근의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의환, 「17~19세기 진천 평산 신씨의 노비 소유와 노비의 존재양상」, 『韓國學論叢』 4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임학성, 「18세기 중엽 沙斤道 소속 驛人의 직역과 신분-1747년 “沙斤道形止案” 자료의 분석 사례-」, 『古文書研究』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 김영나, 「조선 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광우, 「17세기 어녀 校奴婢 일가의 奴婢訟을 통해 본 몇 가지 사회상」, 『영남학』 70, 영남문화연구원, 2019 ; 장재천, 「조선시대 성균관 노비들의 상벌 고찰」, 『한국 사상과 문화』 99, 한국사상문화학회, 2019 ; 김영나, 「18세기 옥산서원 노비의 양상」, 『민족문화논총』 79,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소순규, 「조선전기 공노비의 選上 入役 규정 연구」, 『민족문화연구』 90, 민족문화연구원, 2021 ; 도주경, 「조선 후기 함경도 사노비의 존재양태와 국가 정책」, 『역사와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등이다.

아 있는 관련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민루의 노비 관련 사료는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노비들의 성격과 비교해본다면 기존의 공·사노비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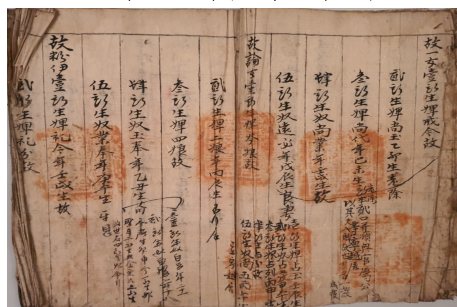
지금까지 지방 의원 소속 노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었기에 제민루 소속 노비들의 실태 분석을 통해 기존의 노비 관련 연구 및 조선 의료 관련 연구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의국노비안」의 내용 및 제민루의 성립 과정과 그 역할을 살펴보고, 제민루에 소속된 노비의 규모 및 나이, 혼인과 가족, 거주 지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醫局奴婢案」의 구성

「의국노비안」은 1책 안에 세 권의 노비안이 묶여 있다. 각각 戊申年, 甲午年, 乙巳年에 작성되었고, 모두 간지로만 연도를 표기하였다. 이 노비안은 노비와 관련한 기존의 다른 사료들과 대체로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婢 ○○-소생 奴/婢 ○○’를 쓰고 노비의 나이와 거주 지역, 혼인 상대방 등을 밝혔다.

「의국노비안」의 일부를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의국노비안」의 일부



무신년 노비안에는 갑오년·을사년의 노비안과는 달리 이미 사망한 노비가 전체 중 40% 가까이 기재되었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무신년 노비안 이전까지 노비들을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하다가 이 시기에 한꺼번에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세 권의 노비안 모두 간지로만 연도가 표기되었기에, 구체적인 연도를 알기 위해 노비안의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무신년 노비안의 내용 중, 비愛心の 1소생 비 守良이 義山院村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노비안은 義山書院 건립 이후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산서원은 현재 영주시 장수면에 있다. 1610년(광해군 2) 行衣寺 옛터에 의산서당을 창건하였고, 1664년(현종 5) 節孝祠를 건립하여 李介立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1679년(숙종 5) 金應祖를 추가 배향하면서 서원으로 승격되었다.<sup>10)</sup> 이로 보아 무신년 노비안은 1679년 이후 작성되었다. 또한 「의원잡물질」을 다룬 연구에서 1668년~1728년까지의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제민루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보면, 무신년 노비안은 1728년(영조 4)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신년 노비안에 기재된 노비들이 갑오년·을사년 노비안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갑오년 노비안은 1774년(영조 50), 을사년 노비안은 1785년(정조 9)에 작성되었다.

「의국노비안」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민루 소속 노비들의 실상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지방 의원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지방 의원에 소속된 노비에 대한 연구도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노비의 여러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제민루의 성립과 역할

영주의 醫局은 1418년(태종 18) 영주군수 李允相이 龜城 남쪽에 3칸

---

10) 『榮州市史』 5,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318쪽.

의 건물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원래 내의원에 진상할 약재를 건조하고 저장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협소하고 누추하여 얼마 가지 않아서 폐지되었다. 1433년(세종 15) 영주군수 반저가 1371년(공민왕 20) 하륜이 건립한 향교를 다시 중수하면서 의국의 옛 터에 동재 6칸과 남루 4칸을 세워서 제민루를 건립하였다. 영주 敎官 文獻은 「제민루기」를 지어서 건립된 경위를 밝혔는데, 이 당시 제민루는 학교와 의국의 기능을 겸하였다.<sup>11)</sup>

1468년(세조 14) 영주군수 鄭從韶는 제민루 서쪽에 4칸을 덧붙여 7칸으로 증축한 이후 鄉序堂으로 명칭을 고쳐서 사용하였는데, 영주 사족들이 학업을 익히거나 향음주례·향사례의 공간으로 이용하였다.<sup>12)</sup> 1588년(선조 21) 영주군수 李大震은 향교의 동무와 서무를 새로 지었고,<sup>13)</sup> 1591년(선조 24) 제민루의 북쪽에 큰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규모를 넓혔으며 유향소의 좌수가 도감의 역할을 하면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1591년의 立議<sup>14)</sup>와 1637년(인조 15) 朴從茂의 「醫局傳掌立規」를 통해 이 당시 제민루가 의국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제민루가 의국의 역할을 주로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伊山書院의 성립과도 관련이 있었다. 영주의 사족들은 함께 모여 공부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읍내에서 가까운 의국을 빌려서 공부하였다. 그러나 의국은 좁고 내의원에 진상할 약재를 말리고 보관하는 곳이어서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다. 또한 유향소 좌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였고 군수의 지원도 필요하였기에,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였다.<sup>16)</sup>

11) 제민루보존회, 앞의 책, 33~34쪽.

12) 동양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역, 앞의 책, 123~124쪽.

13) 앞의 책, 115쪽.

14) 앞의 책, 129~132쪽. 입의에는 약재 및 약값과 관련된 내용, 약재 판매, 제민루의 일을 하는 사람들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15) 제민루보존회, 앞의 책, 36~39쪽, “後來監局諸賢, 倘留意於活人之方, 實用此規而不廢則於當初鄉父老及地主, 完議立局之本意, 與局中劑藥活人之重事, 豈曰少補哉.”

16) 김의환, 「영주 伊山書院의 건립과 퇴계 이황 제향의 의미」,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188~189쪽.

1554년(명종 9) 安珦의 후손인 安瑞이 영주군수에 부임하면서 서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1558년 영주지역 사족과 함께 이산서원을 건립하였다. 이황은 「伊山書院記」<sup>17)</sup>와 「伊山院規」<sup>18)</sup>를 지었고, 이는 이후 다른 서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산서원 건립 이후 제민루는 17세기 중반까지 본격적으로 의국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민루 건물이 쇠락해져서 의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1748년(영조 24) 제민루의 중수가 이루어졌다. 鄭玉의 「濟民樓重修記」를 보면, 제민루는 300여 년 동안 약재를 모아서 내의원예 공물을 납부하였고, 백성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였다.<sup>19)</sup>

또한 제민루에서 관리하던 토지와 의서, 의약도구나 문서철 등 다양한 물품에 대한 기록인 「의원잡물질」은 1616년(광해군 8)부터 1667년(현종 8)까지의 기록이 있고, 이후는 기록이 없다가 1728년(영조 4)에 기록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하였다.<sup>20)</sup> 아마 기록이 누락된 시기에는 제민루가 의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제민루가 17세기 후반에 의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민루 관련 기록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강릉의 경우 1603년부터 강릉약계의 등장으로 사족의 의료가 관의 의료를 대신하였고,<sup>21)</sup> 상주의 존애원 역시 임진왜란 이후 상주의 사족들이

---

17) 『退溪集』 권42, 「伊山書院記」. 이산서원복설추진위원회, 『伊山書院誌』, 홍익문화사, 2010, 31~37쪽. 이황은 「이산서원기」에서 영주 지역의 선비들은 함께 기거하면서 공부하기를 좋아하였는데, 宿舍를 짓지 않아서 고을의 의원을 임시로 빌려 사용했기 때문에 잠깐 모였다가 금방 끝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여겼다고 하였다(“而顧未有館舍之作, 每一聚會, 卽假容於郡之醫院, 旋會旋罷, 斯爲未盡善也.”). 이로 보아 제민루는 의원과 공부하는 장소의 두 가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8) 앞의 책, 권41, 雜著, 「伊山院規」. 앞의 책, 38~42쪽. 이산원규는 원생들이 읽어야 할 서책, 원생들의 생활 규정, 서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 등 12개 조목으로 구성되었다.

19) 제민루보존회, 앞의 책, 47~49쪽, “鄉序西南隅, 有樓焉, 卽濟民樓也, 修簷曲欄, 聯通鄉序, 邃闌風楹, 俯臨長洲所貯者, 非妓女歌舞, 而皆藥物之醫餌者也, 珍材異劑, 俱收並蓄, 上而備太醫之貢, 下而治氓黎之病, 樓以濟民名者此也.”

20) 김호, 앞의 논문, 411쪽.

21) 신동원, 앞의 논문, 5~6쪽.



결성한 낙사계에서 후원하여 설립되었다.<sup>22)</sup> 따라서 관의 의료기관인 제민루는 사족들이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의국 자체의 기능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1818년 朴時源의 「鄉序堂濟民樓重修記」를 보면 제민루는 선비들이 공부를 하는 장소라고 하였고,<sup>23)</sup> 1862년 金鎭河의 「濟民樓移建記」에는 제민루가 약재를 말리거나 노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선비들의 공부에 이루어진 장소라고 하면서, 이 고장 사람으로 누각에 오른 사람들은 제민루의 의미를 알아 각자 신의를 닦고 학업에 열중하며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풍속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sup>24)</sup>

따라서 제민루 중수 이후 의국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었고 향서당과 같은 풍속교화 및 학업을 위한 장소, 사족모임장소 등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제민루가 의국 본연의 기능을 하는 시기는 1591년 이후부터 17세기 후반까지이고, 그 이후의 제민루는 사족을 위한 장소이자 학업을 위한 장소이며, 풍속교화의 장이 되었다.

#### IV. 의국 소속 노비의 규모와 나이

조선 초기부터 국가에서는 지방에 의원을 세우고자 하였다. 1393년(태조 3) 전라도 안렴사 金希善은 각 도에 의원을 설치한 후에 의학교수 1명을 보내서 양반 자제 중 우수한 사람을 생도로 양성하고, 약을 채취하는 사람을 소속시켜 처방에 따라 제조하게 하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 해주자고 건의하였다.<sup>25)</sup> 또한 의생 가운데 의업에 뛰어난 사람들을 중

22) 우인수, 앞의 논문, 9쪽.

23) 제민루보존회, 앞의 책, 50~53쪽, “亦惟吾先祖嘯臯先生, 嘗於是樓之文會, 寄詩以勸勉之, 有曰多士同勤琢磨工.”

24) 앞의 책, 54~56쪽, “始蓋爲醫院曬藥, 而耆老謙飲, 多士肄業, 咸待於是, … 鄉人之登斯樓者, 知得此意, 各修信義, 敦尙學業, 激頽俗而挽淳風, 則庶幾吾鄉之休運, 與樓重新而俟之.”

25) 『太祖實錄』 태조 2년(1393) 1월 29일(을해), 全羅道按廉使金希善報都評議使司曰,

양의 전의감과 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6)</sup> 예종 대에 의금부 경력 李仁晔가 하나의 도에 세 의원을 설치하고, 진상 약재 이외에 남은 약재들로 지방 환자들을 치료하자고 건의하였다.<sup>27)</sup>

그러나 양반들은 의업을 천하게 여겨 여기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의관의 현직 서용에 대해 왕과 신하 사이의 의견이 달랐다.<sup>28)</sup> 따라서 지방 의원들은 지방민을 치료하는 역할보다 진상 약재를 보관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노비가 필요하였다.

제민루의 『醫院立議』<sup>29)</sup>를 보면, 노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제민루에서 약재를 채취하는 데에 승려 10명과 藥干 20명을 배정하였다.<sup>30)</sup> 약한은 약초를 재배하거나 채취하는 하층민으로, 奴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假屬 40명에게 땀나무를 납부하여 약방에 불을 때도록 하였는데,<sup>31)</sup> 이들은 제민루의 일을 위해 임시로 소속되었기에 관청이나 사족

---

“外方無通曉醫藥者，乞於各道遣醫學教授一員。每於界首官，置一醫院，選聚兩班子弟，以爲生徒，擇其識字謹厚者，定爲教導，令習《鄉藥惠民經驗方》，教授官周行講勸，定屬採藥丁夫，以時採取藥材，依方劑造，有得病者，隨即救療。”

26) 『世宗實錄』세종 9년(1427) 11월 2일(병술), 禮曹啓, “令外方各官, 毋役醫院生徒, 專爲習業, 才能者, 選送典醫監及惠民局.”

27) 『睿宗實錄』예종 즉위년(1468) 12월 6일(임진), 其十四曰, “外方設醫院.” 遠方諸邑, 地在遐陬, 京師遙隔, 疾病者不得醫藥, 而可生之人, 或至於死亡, 是誠可憐也. 臣謂每一道, 設醫院三所, 擇退居醫員, 及艱於留京下鄉醫生中精術者, 定爲醫官, 以進上封餘藥材, 劑藥救人, 則庶無夭扎之人矣.

28) 『成宗實錄』성종 24년(1493) 9월 16일(정미), 司憲府掌令楊熙止·司諫院正言柳崇祖等來啓曰, “今因醫員上疏, 精於其術者命敍顯職. 臣等考大典, 載律員·算員所業精通者, 授京外吏職, 而無敍顯職之文. 顯職云者謂六曹·議政府也. 此非醫官所可雜處也.” 傳曰, “世人以醫爲賤, 故人不喜入屬. 往者權擯官至判書, 俞元老歷敍顯職, 豈可例以醫員而不授顯官乎? 且醫事於國家甚重, 爾等雖言之, 不可改也.” 熙止等更啓曰, “權擯習讀官, 元老文科出身也. 今亦有如此人, 則雖用於顯職可也, 豈以醫科出身者敍於顯職乎? 世祖朝有全循義官至正憲, 未嘗敍於顯職. 今若立此法, 則後難以堂上之醫, 敍於六曹, 誰得而防之哉? 法者萬世通行者也, 不可不改.” 不聽.

29) 동양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역, 앞의 책. 취사본(129~132쪽)과 학사본(240~241쪽), 괴헌고택본(480~483쪽)의 입의 부분을 살펴보면, 취사본과 괴헌고택본은 16개조의 동일한 내용이 있고, 학사본은 그 중 6개 조항만 실려 있다.

30) 앞의 책, 131~132쪽, “一. 本鄉僧人十名, 除僧役採藥.” “一. 藥干二十名, 定給.”

개인이 동원하기에 용이한 假屬奴일 수가 있다. 또한 관비 1명이 식모로 배정되었다.<sup>32)</sup> 따라서 제민루의 노비들은 약초를 채집하거나 말리는 일을 하였고 식모로 활동하였으며, 신공을 납부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의국노비안」에 나오는 노비의 규모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미 사망한 노비인 故奴婢와 도망노비, 추가로 기재된 노비를 제외한 수를 실제 노비로 파악하였다.

<표 1> 제민루 노비의 규모 (단위 : 명)

성별 年	노	故	逃	추가 기재	실제노	비	故	逃	추가 기재	실제비	실제 노비수
1728	42	14	0	3	25 (62.5%)	49	20	0	9	20 (37.5%)	45 (100%)
1774	30	6	0	3	21 (45.7%)	38	10	1	2	25 (54.3%)	46 (100%)
1785	33	1	0	0	32 (54.2%)	28	1	0	0	27 (45.8%)	59 (100%)

1728년 노비안에는 노 25명(62.5%), 비 20명(37.5%), 합 45명이 있었고, 노가 비보다 약간 더 많았다. 실제로 존재한 노비 외에 ‘故奴婢’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노는 전체 42명 중 14명(33.3%), 비는 전체 49명 중 20명(40.8%)이다. 노비안 앞부분에 나오는 어머니와 자녀들은 모두 ‘故’라고 표시되었고, 다섯 번째 가족부터 ‘고’가 차츰 줄어들었다. 고노비는 노비안 작성 당시 실제로 사망한 노비라고 할 수 있지만, 신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노비를 ‘故’로 표시할 수 있다.<sup>33)</sup>

이 노비안은 17세기 중반 제민루가 쇠퇴한 이후에 「의원잡물질」과 같이 제민루 소속 노비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다가, 1728년에 「의원잡물질」이 다시 작성되면서 노비안 역시 함께 작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비들이 이후 시기 노비보다는 많고, 고노비에는 이미 사망한 노비와 함께 파악하지 못한 노비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31) 앞의 책, 131쪽, “一. 假屬四十名, 備納柴木, 點火藥房.”

32) 앞의 책, 132쪽, “一. 官婢一人, 定給食母.”

33) 김영나, 「조선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33쪽.

이 시기에 매대한 노비 중 제민루에서 판 노비는 비 尙玉의 1소생 비 玉希와 2소생 비 玉貞이다. 이들은 원래 순흥부에 소속된 屬公婢였다가 정미년(1727)에 放賣되었는데, 누구에게 팔렸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제민루에서 매대한 노비는 노 6명, 비 1명, 총 7명이 있다. 노비안 가장 마지막에 따로 작성하였는데, 개인별로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이 기재되었다. 가장 어린 노비는 노 六男으로 6세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노비는 노 貴章으로 53세였다. 제민루에서 이들을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로 구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중 買得奴의 후손은 나오지 않으나, 매득비 貴女의 경우 그의 자녀와 후손들은 1774년과 1785년 노비안에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존 노비안이나 분재기 등을 보았을 때 비의 후손들은 노비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노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는 양친교혼을 제외하면 확인하기 어렵다.

병에 걸린 노비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 禮丁의 5소생 비 崧分은 당시 나이가 33세였는데 병에 걸렸고, 비 愛心の 6소생 비 五十娘은 당시 나이가 4세였는데, 미약하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노비안 작성 이후 태어난 노비를 추가로 기재한 경우가 있는데, 노 3명, 비 9명, 총 12명이 있다. 예를 들어, 비 守良의 1소생 비 一娘은 노비안 작성 당시 2세로 노비안에 기재되었지만, 2소생 비 一化, 3소생 비 金娘, 4소생 비 賤丹은 각각 신해생(1731년), 계축생(1733년), 병진생(1736년)이어서 노비안 작성 이후에 추가로 기재되었다. 비 丙娘의 3소생부터 6소생까지도 노비안 작성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아서 나중에 기재되었다.

1774년 노비안에는 노 21명(45.7%), 비 25명(54.3%), 합 46명이 있었고, 비가 노보다 약간 더 많았다. 1728년 노비안과 비교하면 전체 수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노는 줄어들었고 비는 늘어났다. 고노비는 이전 시기보다 노는 전체 30명 중 6명(20.0%), 비는 전체 38명 중 10명(26.3%)으로, 그 수와 비율이 모두 줄어들었다. 따라서 ‘고’라고 쓰여진 노비는 실제로 사망한 노비라고 할 수 있고, 가족 모두 ‘고’인 경우가

1728년보다 줄어들었다.

또한 1명의 도망비가 있다. 비 잇당의 1소생 비 齡堂은 이 당시 도망간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1785년에는 도망이라는 표시가 없다. 이는 1774년과 1785년 사이에 도망간 비 잇당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1728년 노비안과 마찬가지로 1774년 이후 추가로 기재된 노 3명, 비 2명, 총 5명의 노비가 있다. 예를 들어, 비 賤丹의 5소생 비 已牙는 1728년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기해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29년생이다. 또한 비 順乃의 4소생 노 白三은 1781년에, 5소생 노 白孫은 1782년에 태어나 1774년 노비안에 추가로 기재되었다. 비 丹伊의 2소생 노 雲白 역시 1782년에 태어났다. 따라서 노비안 작성 이후에 시간이 흘렀더라도 노비의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하였다.

1785년 노비안에는 노 32명(54.2%), 비 27명(45.8%), 합 59명이 있었다. 노가 비보다 약간 더 많았고, 1774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노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고노비는 노 1명, 비 1명이 있는데, 비 단이와 그의 2소생 노 운백이다. 노 운백은 살아 있었다면 1785년 당시에 4세였고, 비 단이는 27세였다. 즉, 비 단이는 1782년에 노 운백을 낳고 1785년 노비안 작성 이전에 사망하였다.

제민루에서 매득한 노비는 노 順民이 있는데, 어떠한 경로로 누구로부터 매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제민루에서 방매한 노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여 노비안에 종이를 붙인 기록들이 있다. 비 者斤丹의 3소생 비 龍心은 1785년에 6세였으나, 1806년 봄에 제민루의 채무를 갚기 위해 비 용심과 그의 전후 소생을 아울러 龜學亭 金院長 댁에 팔았다는 내용이 있다.<sup>34)</sup> 이 당시 비 용심은 27세였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인데, 제민루의 채무를 갚기 위해 노비들을 김원장 댁에 판 것이다. 구학정 김원장 댁은 栢巖 金玟(1540~1616)<sup>35)</sup> 가문 댁이다.

34) 1785년 「의국노비안」, “丙寅春以報債事前後所生并以放賣於龜鶴亭金院長宅.”

35) 『榮州市史』 4,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97~99쪽. ; 『榮州市史』 5, 앞의 책, 463쪽. 김득은 1564년(명종 19)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573년 이산서원의 원장이 되었다. 1576년(선조 9)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대사헌, 이조참판, 홍문관 부제학 등을

또한 비 命月의 3소생 노 憶爲, 4소생 노 毛伊金, 5소생 비 順每를 1800년 영월에 거주하는 丁生員 덕에 방매하였다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1785년에는 노 억위는 18세, 노 모이금은 11세, 비 순매는 5세였지만, 방매 당시에는 이들은 각각 33세, 26세, 20세였다. 어떠한 이유로 방매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마 제민루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노비의 나이를 살펴보겠다. 보통 老·壯·弱으로 구분하는데, 『經國大典』에 의하면 16~60세까지는 신역이나 신공의 의무가 있다.<sup>36)</sup> 따라서 16~60세까지는 壯이고, 15세 이하는 弱, 61세 이상은 老이다. 제민루 소속 노비의 나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제민루 소속 노비의 나이 분포 (단위: 명)

		1728			1774			1785		
나이		노	비	합	노	비	합	노	비	합
弱	1~10세	6 (24.0%)	2 (10.0%)	8 (17.8%)	4 (19.0%)	4 (16.0%)	8 (17.4%)	3 (9.4%)	4 (14.8%)	7 (11.8%)
	11~15세	3 (12.0%)	3 (15.0%)	6 (13.3%)	1 (4.8%)	2 (8.0%)	3 (6.5%)	5 (15.6%)	2 (7.4%)	7 (11.8%)
壯	16~20세	4 (16.0%)	1 (5.0%)	5 (11.1%)	1 (4.8%)	2 (8.0%)	3 (6.5%)	5 (15.6%)	2 (7.4%)	7 (11.8%)
	21~30세	4 (16.0%)	3 (15.0%)	7 (15.6%)	2 (9.4%)	2 (8.0%)	4 (8.7%)	3 (9.4%)	2 (7.4%)	5 (8.5%)
	31~40세	3 (12.0%)	3 (15.0%)	6 (13.3%)	6 (28.6%)	7 (28.0%)	13 (28.2%)	2 (6.3%)	1 (3.8%)	3 (5.1%)
	41~50세	3 (12.0%)	2 (10.0%)	5 (11.1%)	1 (4.8%)	-	1 (2.2%)	7 (21.8%)	7 (25.9%)	14 (23.7%)
	51~60세	1 (4.0%)	4 (20.0%)	5 (11.1%)	-	2 (8.0%)	2 (4.3%)	1 (3.1%)	-	1 (1.7%)
老	61~70세	-	-	-	1 (4.8%)	1 (4.0%)	2 (4.3%)	-	3 (11.1%)	3 (5.2%)
	71세~	-	-	-	1 (4.8%)	-	1 (2.2%)	2 (6.3%)	1 (3.7%)	3 (5.2%)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모집하여 활동하였고, 여러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다. 1612년 김직재 옥사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1616년 사망하였다. 김록의 본가는 원래 구학정(현, 영주시 가흥동)이 있는 자리였는데, 성 안이 가까워 조용히 지내기에 어렵다고 하여 천운정(현, 영주시 이산면)을 짓고 여기에서 지냈다고 한다.

36) 『經國大典』, 「戶曹」, 徭賦, 外居奴婢身貢, “外居奴婢, 除選上·雜故外, 年十六歲以上六十歲以下, 竝收貢, 皆納司贍寺. 奴, 綿布一匹·楮貨二十張, 婢, 綿布一匹·楮貨一十張.”

18세기 영주 濟民樓 소속 노비의 모습(김영나)

미상	1 (4.0%)	2 (10.0%)	3 (6.7%)	4 (19.0%)	5 (20.0%)	9 (19.7%)	4 (12.5%)	5 (18.5%)	9 (15.2%)
합	25 (100%)	20 (100%)	45 (100%)	21 (100%)	25 (100%)	46 (100%)	32 (100%)	27 (100%)	59 (100%)

1728년 노비안에서 弱은 노 9명(36.0%), 비 5명(25.0%), 합 14명(31.1%)이고, 壯은 노 15명(64.0%), 비 13명(75.0%), 합 28명(68.9%)이며, 老는 없다. 10세 단위로 살펴보면, 10대가 노 7명(28.0%), 비 4명(20.0%), 합 11명(24.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1~10세 사이 8명, 20대 7명, 30대 6명, 40대와 50대가 각각 5명씩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각 세대별로 노비의 수가 균형 있게 분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壯의 나이라도 신공이나 신역이 면제되는 노비들은 따로 표시하였는데, 老除인 비 3명이 있다. 노제는 나이가 들어서 신공이 면제되는 것인데, 1727년에 방매된 비 옥희와 비 옥정의 어머니인 비 尙玉은 54세의 나이에 신공을 면제받았다. 또한 비 承分の 1소생 비 哲良은 57세의 나이에, 비 禮丁의 1소생 비 愛心은 52세의 나이에 신공을 면제받았다. 이들은 나이상 壯 연령층이었으나 신공을 면제받은 것이다.

1774년 노비안에서 弱은 노 5명(23.8%), 비 6명(24.0%), 합 11명(23.9%)이고, 壯은 노 10명(47.6%), 비 13명(52.0%), 합 24명(49.9%)이며, 老는 노 2명(9.6%), 비 1명(4.0%), 합 3명(6.4%)이다. 壯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전 시기보다 약과 장이 상대적으로 적고, 노가 늘어났다. 10세 단위로 살펴보면, 30대가 노 6명(28.6%), 비 7명(28.0%), 합 13명(28.2%)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1~10세 8명, 10대 6명, 21~30세 4명 순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신공을 낼 수 있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신공을 낼 예정인 15세 이하도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 신공이나 신역이 면제된 노비를 보면, 비 丙娘의 6소생 비 技喜는 병에 걸려서 신공이 면제되었다. 비 병랑의 가족들은 1728년 노비안에 나오는데, 비 병랑의 1소생 노 允男과 2소생 노 允奉은 이 당시 각각 8세와 4세였고, 3소생 비 守永부터 막내 비 기희까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노비안 작성 이후에 추가로 기재되었다. 1774년 노비안에 비 기희의 나이를 기재하지 않아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40대

중반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비 기회는 1785년 노비안을 통해 이 때는 병이 다 나아서 신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85년 노비안에서 弱은 노 8명(25.0%), 비 6명(22.2%), 합 14명(23.6%)이고, 壯은 노 18명(56.2%), 비 12명(44.5%), 합 30명(50.8%)이며, 老는 노 2명(6.3%), 비 4명(14.8%), 합 6명(10.4%)이다. 壯이 절반이 조금 넘고 弱은 1774년보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전체 비율은 약간 줄어들었고, 老의 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10세 단위로 살펴보면, 40대가 노 7명(21.8%), 비 7명(25.9%), 합 14명(2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1~10세, 10대, 20대가 각각 7명(11.8%)씩 있으며, 20대가 5명(8.5%)이 있다. 이는 1774년 노비안 작성 당시 기재된 노비 중 많은 수가 여전히 생존하였고, 이들은 10년 정도 나이를 더 먹었을 것이다. 따라서 1774년에 30대가 가장 많았는데, 1785년에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제민루 노비 외에 사노비나 서원노비의 나이를 살펴보면, 17~19세기 진천 평산 신씨 가문 노비는 壯 연령이 62.9%였고,<sup>37)</sup> 병산서원에서 壯 연령의 노비가 1738년에 51.8%<sup>38)</sup>, 옥산서원에서 壯 연령의 노비가 1774년에 83.4%였다.<sup>39)</sup> 따라서 사노비나 서원노비의 경우도 전체 노비의 절반이 넘는 수를 壯 연령이 차지하였다.

18세기 제민루 소속 노비들은 45명에서 59명까지 있었고, 1774년과 1785년 노비안은 10여 년 정도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기재된 노비들의 정보는 비슷하였다. 대체로 노가 비보다 더 많았고, 고노비는 시기가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노비들의 나이를 보면 신역이나 신공을 담당하는 壯 노비가 가장 많았고, 그 중 1728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

37) 김의환, 「17~19세기 진천 평산 신씨의 노비 소유와 노비의 존재양상」, 『韓國學論叢』 4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249쪽.

38) 김영나, 「17~19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존재양상」, 『대동한문화』 67, 대동한문화회, 2021, 160쪽.

39) 김영나, 「18세기 옥산서원 노비의 양상」, 314쪽.



당시에는 제민루 소속 노비의 정리가 이루어져서 신공의 대상이 되는 노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신공을 담당하지 않는 老 노비는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노비안에는 老 노비가 존재하는데 이전 노비안에 기재되었던 노비들이 지속적으로 노비안에 기재되었다.

## V. 혼인과 가족 구성

『경국대전』에서는 천인의 소속을 從賤法으로 규정하였다. 천인은 그 어머니의 역을 따르고, 천인과 양인 여자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역을 따랐다.<sup>40)</sup> 따라서 노비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자녀들은 반드시 노비가 되었고, 사족은 자신의 재산인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노를 양인 여자와 혼인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1669년(현종 10) 從母從良法이 실시되어, 노가 양인 여자와 혼인을 하면 그 자녀는 양인이 되었다.<sup>41)</sup> 이후 1675년(숙종 1) 이들이 還賤되었다가, 1681년(숙종 7) 다시 從良되었다가, 1689년(숙종 15) 다시 환천되었으며, 1731년(영조 7) 從母法이 제정되어 천인의 자녀는 모두 어머니의 역을 따르게 되었다.<sup>42)</sup>

노비의 혼인 유형을 살펴보면, 단성호적에 나타난 공노비는 시기가 뒤로 갈수록 같은 소속 사이의 혼인은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소속 및 양인과의 혼인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공노의 교혼이 많았다.<sup>43)</sup> 평산신씨 가문의 1669~1891년 호적자료에 나오는 노비의 혼인은, 사노와 사비의

40) 『經國大典』, 「刑典」, 公賤, “凡賤人所係, 從母役. 唯賤人娶良女所生, 從父役.”

41) 『顯宗改修實錄』 권20, 현종 10년(1669) 1월 10일(갑진), “命公私賤良妻所生, 一從母役, 立制定式.”

42) 『續大典』, 「刑典」, 公賤, “公·私賤娶良妻所生男女, 竝從母役. 顯宗己酉(1669), 始命從良. 肅宗乙卯(1675), 還賤. 辛酉(1681), 又從良. 己巳(1689), 還賤, 而已屬良役者, 勿論. 當宁庚戌, 又命辛亥(1731)正月初一日子時爲始, 所生竝從母役.”

43) 김상환,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17·8세기 丹城縣 戶籍大帳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2, 경북사학회, 1989, 79~84쪽.

혼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양친교혼이었지만, 19세기로 갈수록 양친교혼의 비율이 줄어들었다.<sup>44)</sup>

도산서원과 소수서원, 병산서원과 옥산서원 등 서원노비의 경우는 시기와 관계없이 원비와 미상의 혼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원노와 양녀의 혼인이었다.<sup>45)</sup> 그러나 1731년 종모법이 제정 이후로는 원노와 양녀의 혼인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제민루 소속 노비의 혼인 유형과, 혼인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들을 <표 3>을 통해 파악해보겠다.

<표 3> 제민루 소속 노비의 혼인상대와 자녀 수 (단위 : 명)

연도	혼인상대	혼인건수	자녀 수		
			노	비	합
1728	비+미상	21(95.5%)	17	16	33(89.2%)
	노+양녀	1(4.5%)	2	2	4(10.8%)
	합	22(100%)	19	18	37(100%)
1774	비+미상	26(96.3%)	13	21	34(87.2%)
	노+양녀	1(3.7%)	3	2	5(12.8%)
	합	27(100%)	16	23	39(100%)
1785	비+미상	24(96.0%)	25	24	49(90.7%)
	노+양녀	1(4.0%)	3	2	5(9.3%)
	합	25(100%)	28	26	54(100%)

제민루 노비들의 혼인관계는 다른 노비에 비해 단순하여 비와 미상, 노와 양녀의 혼인만 있고, 노와 양녀의 혼인은 각 시기별로 1건씩 존재하였다. 비와 미상의 혼인이 많은 이유는 비는 어떤 대상과 혼인을 해도 그 자녀는 모두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되었기 때문에 비의 혼인 대상이 특별하지 않다면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728년에는 종친법이 시행되는 시기로, 노비가 누구와 혼인하든지 그

44) 앞의 논문, 239~242쪽.

45) 김영나, 「조선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243~244쪽.

자녀는 노비가 되었다. 비와 미상의 혼인은 21건(95.5%), 이들의 자녀는 31명(8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노와 양녀의 혼인은 고비一女의 5소생 노 遠必과 양녀의 혼인이 있었다. 이들 사이에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소생 비 占玉은 17세, 2소생 노 占發은 15세, 3소생 비 占列은 13세, 5소생 노 尙五는 3세로, 모두 함께 영월에 거주하였다. 4소생 비 占分은 사망하였다.

1774년에는 종모법이 시행되는 시기로, 노가 양녀와 혼인하면 그 자녀는 모두 양인이 되었다. 비와 미상의 혼인은 26건(96.3%), 자녀는 34명(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노와 양녀의 혼인은 1728년과 동일하게 노 원필과 양녀의 혼인이 있었다. 노 원필은 1688년에 출생하여 이 시기에는 87세였지만, ‘故’라고 표시하지는 않았다. 1728년과 같이 5명의 자녀의 이름과 나이, 사망 여부가 나오고, 1728년과 1774년 사이에 자녀 한 명이 더 태어나서 6소생 노 於去里가 기재되어 있는데, 나이는 알 수 없었다. 노 원필은 종모법 시행 이전에 혼인을 하였고 자녀들도 종모법 제정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비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6소생 노 어거리 또한 1731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1785년 노비안에도 비와 미상의 혼인이 24건(96.0%), 자녀는 49명(90.7%)으로 노비의 대부분이다. 노와 양녀의 혼인은 앞에서 나온 노 원필과 양녀의 혼인인데, 이 당시 노 원필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비안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들의 자녀는 1774년 노비안과 동일한데, 이미 사망한 4소생 비 占分은 노비안에서 삭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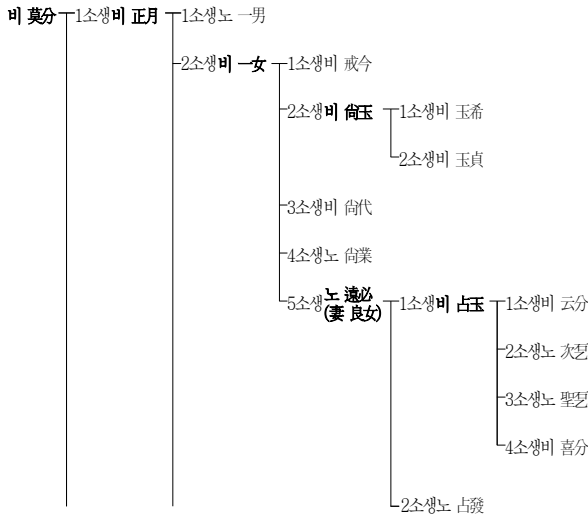
노비의 규모에 대한 내용에서 1785년 노비안에 고노비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사망한 노비가 적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전에 사망한 노비를 노비안에 기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시기 ‘故’라고 언급한 노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 단이(27세)와 그의 아들 운백(4세)인데, 두 사람은 1774년에서 1785년 사이에 사망한 노비로 보인다. 즉, 1774년 이전에 사망한 노비는 ‘故’라고도 언급하지 않고 삭제하였다.

의국에 소속된 노비의 혼인양상을 보면 종모법 이전부터 비와 미상, 노와 양녀의 혼인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제민루 소속 노비들의 혼인은

국가의 제도와는 상관없이 두 가지 혼인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노비의 혼인이 두 가지 방식만 있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혼인 유형의 사료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의국 소속 노비의 가족은 세대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공노비의 가족과 비슷하였다.<sup>46)</sup> 사노비의 가족들은 보통 노비의 주인이 노비를 획득하고 난 후 다음 상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기가 세대가 이어지는 기간이었다.<sup>47)</sup> 따라서 공노비는 가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사노비는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가족이 흩어질 수 있었다. 서원노비는 공노비의 가족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특히 병산서원의 경우는 8세대까지 가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sup>48)</sup>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 莫分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 비 莫分의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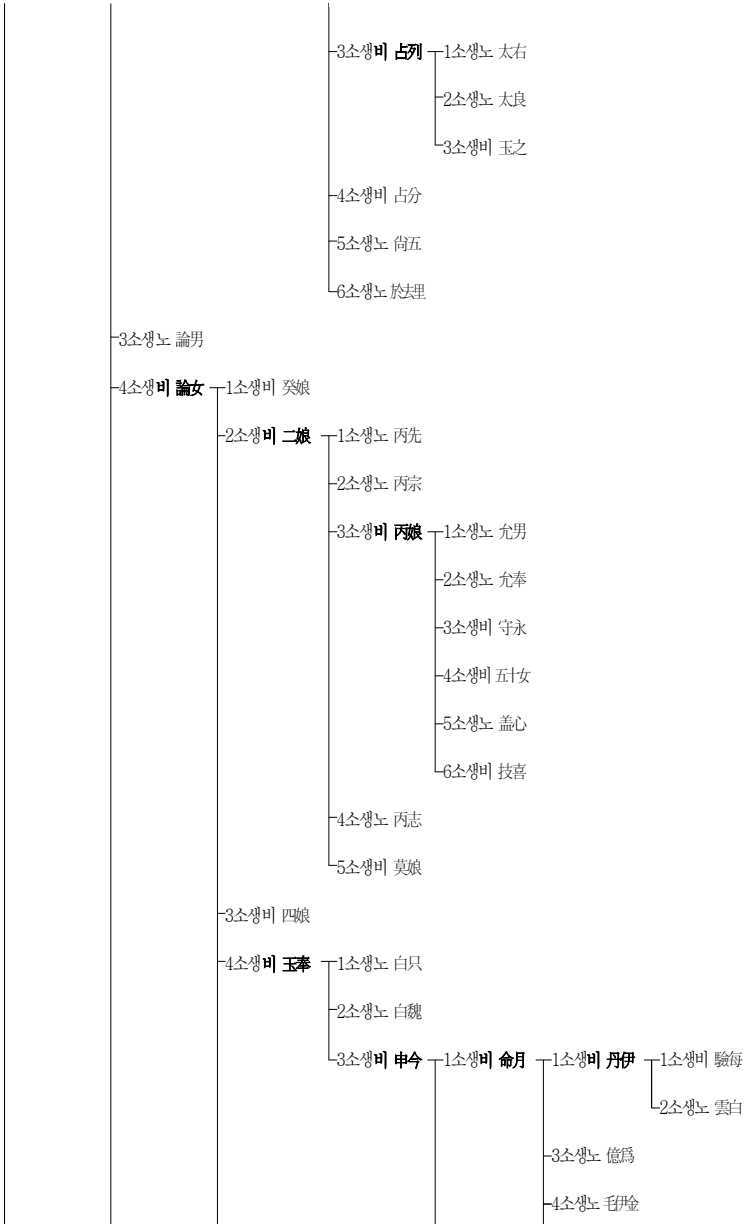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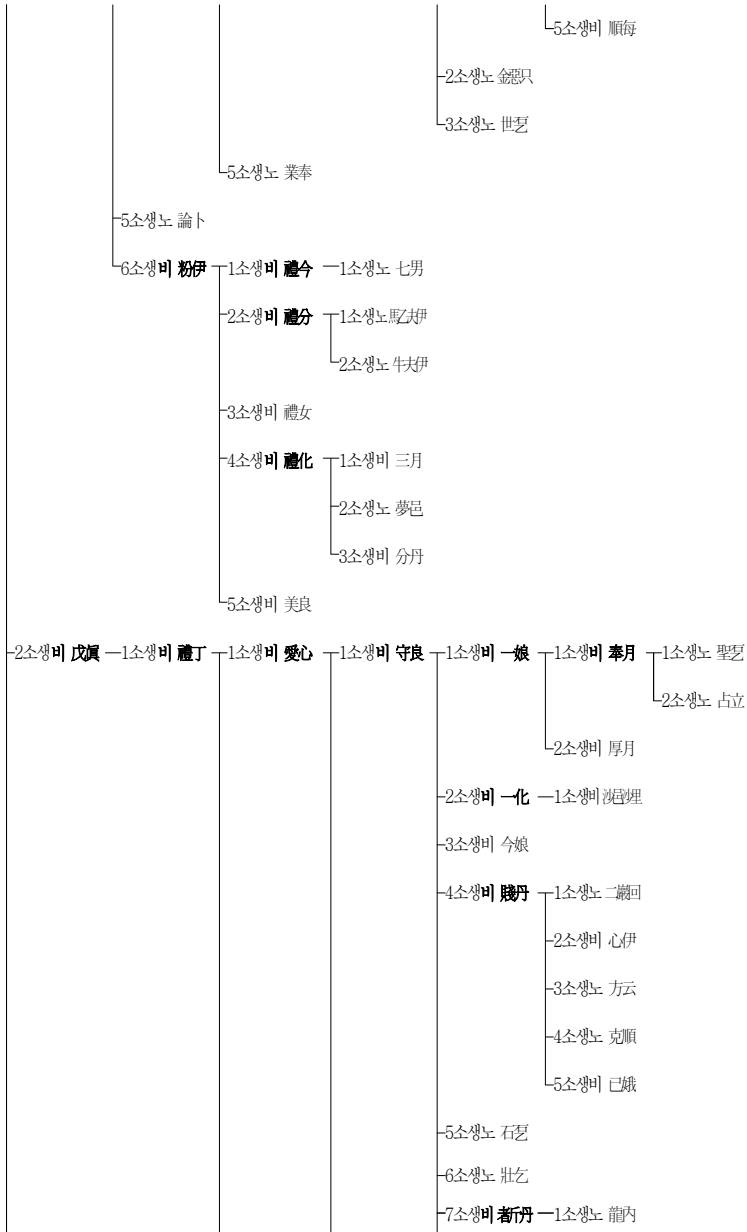
46) 김상환, 앞의 논문, 72~74쪽.

47) 문숙자, 「16~17세기 兩班家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固城李氏 臨淸閣 分財記 분석을 통하여-」, 『고문서연구』 32, 한국고문서학회, 2008, 1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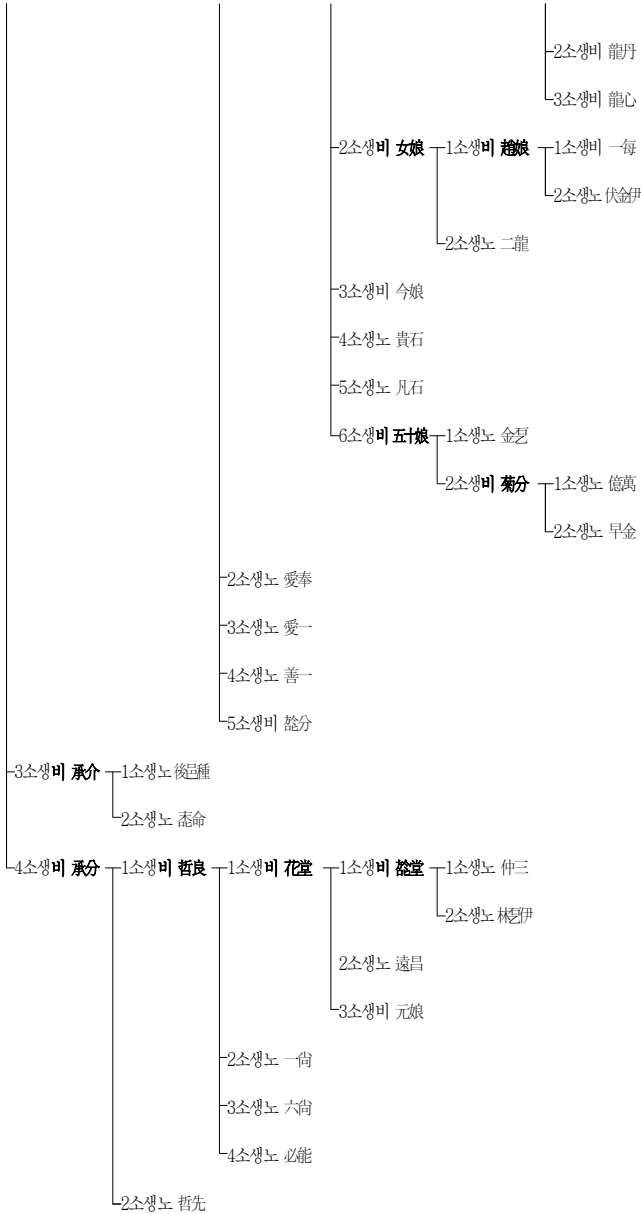
48) 김영나, 「17~19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존재양상」, 176~181쪽.

18세기 영주 濟民樓 소속 노비의 모습(김영나)





18세기 영주 濟民樓 소속 노비의 모습(김영나)



비 막분은 4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 중 1소생 비 정월과 2소생 비 무진의 가족은 7세대, 4소생 비 승분의 가족은 5세대까지 이어졌다. 비 정월은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중 2소생 비 일녀, 4소생 비 논녀, 6소생 비 분이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나오고, 1소생 노 일남, 3소생 노 논남, 5소생 노 논복의 자녀와 후손들은 없었다.

비 일녀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중 2소생 비 상옥과 5소생 노 원필의 자녀가 있었다. 비 상옥의 후손은 두 자녀인 비 옥희와 비 옥정 이후로는 기록이 없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모두 1727년에 방매되어 더 이상 제민투의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 원필은 양녀와 혼인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노의 혼인과 그 자녀가 유일하게 나온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었지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계는 노와 양녀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만 기재되었고 나머지는 노의 자녀가 있어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노가 어느 소속의 비와 혼인하든지 상관없이 자녀는 어머니 쪽의 가계에 소속되었기에, 사족들은 양녀와의 혼인을 장려하였다. 노 원필의 6명의 자녀 중 1소생 비 점옥, 3소생 비 점렬은 자녀와 함께 기재되었다.

비 정월의 4소생 비 논녀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2소생 비 이랑과 4소생 비 옥봉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다. 비 이랑의 자녀는 5명이 있었는데, 그 중 3소생 비 병랑의 자녀 6명만 나왔다.

비 옥봉의 자녀는 3명인데, 그 중 3소생 비 신금의 자녀 3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1소생 비 명월을 중심으로 자녀와 손자녀까지 기재되었다. 비 정월의 6소생 비 분이는 딸 5명이 있는데, 그 중 이미 사망한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자녀가 있었다.

비 막분의 2소생 비 무진은 자녀가 비 예정 1명이었지만, 비 예정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 중 1소생 비 수량과 2소생 비 여량, 6소생 비 오십랑의 후손들이 기재되었다. 비 수량은 7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 중 1소생 비 일랑, 2소생 비 일화, 4소생 비 천단, 7소생 비 자근단과 이들의 후손이 존재하였다.

비 막분의 3소생 비 승분은 자녀 2명만 있고 이들의 후손은 나오지



않는다. 아마 두 명 모두 노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 막분의 4소생 비 승분의 경우 1소생 비 철랑과 철랑의 증손까지 있었다.

비 막분의 가계는 최대 8세대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안에 수많은 가족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비 중심으로 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노 중심의 가계는 양녀와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들만 기재되었다. 제민루 노비의 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노비의 소속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VI. 거주 지역의 양상

노비가 거주하는 지역을 보면, 官奴婢는 관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였고, 校奴婢는 향교에 거주하거나 향교 근처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寺奴婢는 거주지의 제한이 없었다.<sup>49)</sup> 사노비는 주로 주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주인의 거주지 근처 지역에 살기도 하였지만, 주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도 하였다.<sup>50)</sup> 서원노비들은 서원 근처와 서원이 있던 지역에 주로 거주하다가 점차 거주 지역이 확대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서원 근처로 축소되었다.<sup>51)</sup> 그렇다면 제민루 소속 노비의 거주 지역은 어떠한지 <표 4>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제민루 소속 노비의 거주지역

(단위 : 명)

年	1728			1774			1785		
성별 지역	노	비	합	노	비	합	노	비	합
영주	18 (72.0%)	12 (60.0%)	30 (66.7%)	10 (47.6%)	14 (56.0%)	24 (52.1%)	16 (50.0%)	12 (44.4%)	28 (47.4%)

49) 김상환, 앞의 논문, 50쪽.

50)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연구』, 집문당, 1997, 108~120쪽.

51) 김영나, 「18세기 옥산서원 노비의 양상」, 299쪽·306쪽.

영양	3 (12.0%)	0	3 (6.7%)	0	1 (5.0%)	1 (2.2%)	0	1 (3.7%)	1 (1.7%)
봉화	-	-	-	3 (14.3%)	4 (16.0%)	7 (15.2%)	2 (6.3%)	3 (11.2%)	5 (8.5%)
순흥	-	-	-	-	-	-	0	2 (7.4%)	2 (3.4%)
안동	0	1 (5.0%)	1 (2.2%)	-	-	-	1 (3.1%)	0	1 (1.7%)
풍기	1 (4.0%)	0	1 (2.2%)	-	-	-	-	-	-
영해	0	2 (10.0%)	2 (4.4%)	-	-	-	-	-	-
인동	-	-	-	-	-	-	3 (9.4%)	2 (7.4%)	5 (8.5%)
영월	3 (12.0%)	3 (15.0%)	6 (13.4%)	8 (38.1%)	5 (20.0%)	13 (28.3%)	10 (31.2%)	6 (22.2%)	16 (27.1%)
정선	0	2 (10.0%)	2 (4.4%)	-	-	-	-	-	-
청풍	-	-	-	0	1 (5.0%)	1 (2.2%)	0	1 (3.7%)	1 (1.7%)
합	25 (100%)	20 (100%)	45 (100%)	21 (100%)	25 (100%)	46 (100%)	32 (100%)	27 (100%)	59 (100%)

1728년 노비안에 나오는 노비의 거주 지역은 경상도 영주·영양·풍기·영해, 강원도 영월·정선 등 6개 지역이었다. 영주에 거주하는 노비가 노 18명(72.0%), 비 12명(60.0%), 합 30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원도 영월에 노 3명(12.0%), 비 3명(15.0%), 합 6명(13.4%)이다.

영주에 거주한 노비 중 비 6명은 의산서원 원촌에 거주하였는데, 비 애심의 1소생 비 수량과 그의 4자녀, 비 분이의 4소생 비 예화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원 소속이 아니라 제민루 소속이었고, 제민루의 신공과 신역을 담당하였다.

영해에 거주한 노비들은 비 상옥의 1소생 비 옥희와 2소생 비 옥정이 있었다. 비 상옥은 원래 영월에 거주하였고, 남편은 成發인데 신분은 알 수 없다. 1727년 비 옥희와 비 옥정은 방매되었는데, 그 이전에 영해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영월에 거주한 노비들은 비 일녀의 5소생 노 원필과, 그의 다섯 자녀였다. 비 일녀와 그의 다른 자녀들은 모두 영주에 거주하거나 이

미 사망한 상태였다. 노 원필은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영주에 거주하였다가 양녀와 혼인하면서 또는 양녀와 혼인한 이후에 영월로 거주지를 옮겨서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한 가족이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비 분이의 4소생 비 예화는 의산서원 원촌에, 5소생 비 미량은 정선에 거주하였고, 비 예정의 5소생 비 엇분은 정선에,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영주에 거주하였다. 비 애심의 1소생 비 수량은 의산서원 원촌에,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영주에 거주하였다. 노비안에서는 하나의 가족 형태를 유지하였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흩어져서 거주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74년 노비안에 나오는 노비의 거주 지역은 경상도 영주·영양·봉화, 강원도 영월, 충청도 청풍 등 5개 지역이었다. 영주에 거주하는 노비가 노 10명(47.6%), 비 14명(56.0%), 합 24명(52.1%)으로, 노는 1728년보다 줄어들었으나 전체 비 중 절반 이상이 영주에 거주하였다. 다음은 강원도 영월에 노 8명(38.1%), 비 5명(20.0%), 합 13명(28.3%)으로, 1728년보다 노비 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두 지역에는 약 80% 이상의 노비들이 거주하였다.

한편 거주 지역을 옮긴 노비들도 있었다. 1728년 의산서원 원촌에 거주한 노비 중 비 수량의 자녀 중 4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3명과 그들의 자녀들은 의산서원 원촌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영주 안의 다른 곳으로 거주 지역을 옮겼을 수도 있었다.

1728년에는 영주에 거주하였으나 1774년에는 봉화에 거주한 노비들도 있다. 비 논녀의 4소생 비 옥봉과 그의 자녀들은 1728년에는 영주에 거주하였는데, 1728년과 1774년 사이에 비 옥봉의 3소생 비 신금은 봉화로 거주지를 옮겼고, 1774년에는 비 신금과 그의 1소생 비 명월, 비 명월의 1소생 비 단이, 비 단이의 1소생 비 험태과 2소생 노 운백, 비 신금의 2소생 노 금악지, 3소생 노 세돌이 모두 봉화에 거주하였다.

영월에 거주한 노비들은 1728년 노비안에 나온 비 일녀의 5소생 노 원필과, 그의 다섯 자녀, 노 원필의 1소생 비 점옥의 자녀들, 3소생 비

점철의 자녀들이다. 노 원필의 2소생 노 점발, 5소생 노 상오, 6소생 노 어거리의 자녀들은 기재되지 않았고, 4소생 비 점분은 사망하여 자녀가 없었다. 노 원필의 가족들은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영월에 거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하나의 가족이 대부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전 시기보다 많아졌다.

1785년 노비안에 나오는 노비의 거주 지역은 경상도 영주·영양·봉화·순흥·안동·인동, 강원도 영월, 충청도 청풍 등 8개 지역이었다. 노비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였다. 영주에 거주하는 노비가 노 16명(50.0%), 비 12명(44.4%), 합 28명(47.4%)으로, 1774년보다 수는 증가하였으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여 비율은 줄어들었다. 다음은 강원도 영월에 노 10명(31.2%), 비 6명(22.2%), 합 16명(27.1%)으로, 1774년보다 수는 증가하였지만 비율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두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는 전체 노비 중 74.5%로 2/3 이상 차지하였다.

노비의 거주 지역은 대부분 1774년과 비슷하지만 차이를 살펴보면, 1774년 봉화에 거주한 노비 중 비 명월과 그의 1소생 비 단이는 사망하였고, 3소생 노 역위와 4소생 노 모이금, 5소생 비 순매는 1800년에 영월에 거주하는 정생원 덕에 방매되었다. 또한 비 일화의 1소생 비 사읍사리는 영주에 거주하였다가 1785년에는 순흥 읍내에 거주하였고, 비 천단의 자녀들은 영주에 거주하다가 1785년에는 인동에 거주하였다.

어떠한 이유로 거주 지역을 옮겼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본인의 의도가 아닌 소유주의 의도였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1774년과 같이 대부분 하나의 가족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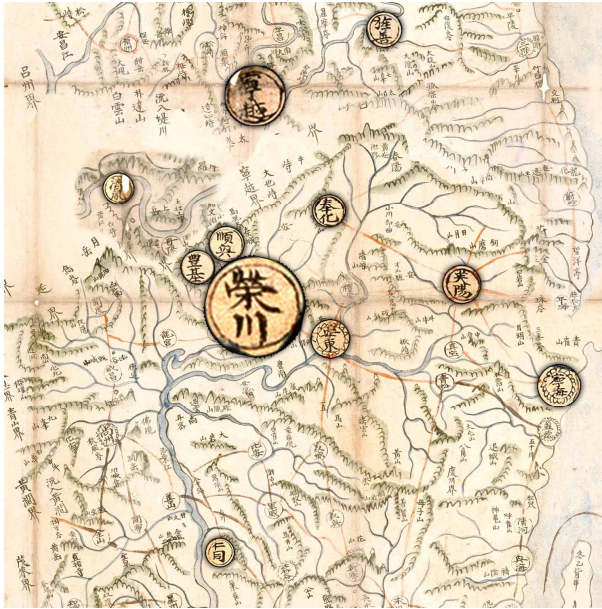
영월에 거주한 노비가 많았던 이유는 필요한 약재를 구하고 운반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영월은 오미자·인삼·바디나물뿌리·송검초뿌리·쥐꼬리망초뿌리·복령(茯苓)·나팔꽃씨·대왕풀·담비쓸개·녹각교(鹿角膠)·오소리기름·회양목·자초(紫草) 등의 약재가 생산되는 지역<sup>52)</sup>이었고, 영주와의 거

52) 『世宗實錄』 권153, 지리지, 영월, “藥材, 五味子·人蔘·前胡·當歸·秦艽·茯苓·牽牛子·白芨·獺膽·鹿角膠·獐油.” 『關東邑誌』(奎 12172), 4책, 영월, 1871(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物産, 火石·黃楊木·五味子·紫草·人蔘·茯苓·訥魚·餘項魚·錦鱗

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한 노비들은 제민루에 공급할 약재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제민루 노비들의 거주 지역을 지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민루 소속 노비의 주요 거주 지역



제민루가 있는 영주와 경상도 북쪽, 강원도 영월에 많은 수의 노비가 있었고, 강원도 정선과 충청도 청풍 등 주로 경상도 북쪽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도 거주하였다. 이러한 지역에 제민루 소속 노비가 거주했던 이유는, 제민루가 있는 영주와 가까운 지역이었고 약재를 모이기 편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

魚·清蜜.”

## VII. 맺음말

제민루는 지방관 및 영주 사족들에 의해 의원으로 건립되었고, 학교 및 향음주례·향사례의 기능도 하였다. 시기에 따라 의원의 역할을 주로 하거나, 학업을 익히는 장소나 사족의 모임 장소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지방 의원에 소속된 노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었기에, 본 논문은 영주의 의국인 제민루와 관련된 사료 중 「의국노비안」을 이용하여 제민루에 소속된 노비들의 여러 모습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1728년 노비안에는 45명, 1774년에는 46명, 1785년에는 59명이 있었고, 노비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1728년에 고노비가 34명이 있었는데, 1774년에는 16명, 1785년에는 2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1728년 이전에는 노비안이 작성되지 못하다가 1728년에 다시 작성되면서, 이 노비안에는 이미 사망한 노비뿐만 아니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비들도 ‘故’라고 표시했고, 이후 노비안에는 사망한 노비만 ‘故’라고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민루의 운영 상황에 따라 노비를 매매하기도 하였다.

제민루 노비들의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제민루에 신공을 내는 壯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특히 1728년에는 老 연령층이 없는데, 이는 1728년에 노비안을 새로 만들면서 신공을 내는 대상인 壯 연령층과 신공을 낼 대상인 弱 연령층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노비의 혼인은 두 유형이 있었는데, 비와 미상의 혼인과 노와 양녀의 혼인이다. 비와 미상의 혼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노와 양녀의 혼인은 각 노비안에 같은 노의 혼인이 1건씩 있었다. 노비의 혼인은 대체로 종모법 실시 이전에는 혼인 유형이 다양하였지만 종모법 실시 이후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민루 소속 노비는 종모법과 관계 없이 혼인 유형이 두 가지였다.

노비의 가족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의국 노비는 누군가에게 상속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가족끼리 흩어지는 경우가 적었다.

노비들은 제민루가 있는 영주를 비롯하여 영양·봉화·순흥·안동·풍기 등의 경상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영월 등에 거주하였다. 18세기의 노비안세 건만 있었기 때문에 제민루 소속 노비들의 거주 지역이 축소되었거나 확대된 양상은 잘 알 수 없으나, 영주에는 전체의 절반 정도의 노비들이 있었고 영월에 거주하는 노비들은 대체로 20%가 넘었다. 이는 제민루의 원래 기능인 약재의 조달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제민루 관련 사료 중 18세기 노비안세 건을 이용하여 제민루에 소속된 노비의 규모와 나이, 혼인과 가족,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국 노비의 존재양상을 살펴보았다. 제민루는 지방관과 영주 사족들이 힘을 합쳐 건립·운영하였고, 제민루에 소속된 노비는 서원노비와 같이 국가나 지방관, 사족들이 노비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모습은 공노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노비를 매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면 사노비의 성격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의국 소속 노비는 공노비의 성격과 사노비의 성격을 함께 가진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0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太祖實錄』 『世宗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顯宗改修實錄』  
『經國大典』 『續大典』  
『關東邑誌』(奎 12172), 1871(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退溪集』
- 權泰乙·姜慶模, 『存愛院誌』, 문창사, 2007.  
權泰乙·金基卓·金子相·韓基汶 공저, 『조선 최초 사설 의료원 存愛院』, 문창사, 2005.
- 김건태, 「18세기 중엽 사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75, 대동문화연구원, 2011, 87~150쪽.
- 김상환,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17·8세기 丹城縣 戶籍大帳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2, 경북사학회, 1989, 41~96쪽.
- 김성수, 「18세기 후반 의학계의 변화상: 『欽英』으로 본 조선후기 의학」, 『한국문화』 6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99~134쪽.
- 김영나, 「17~19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존재양상」,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149~196쪽.
- \_\_\_\_\_, 「18세기 陶山書院 노비의 혼인과 가족」,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43~82쪽.
- \_\_\_\_\_, 「18세기 옥산서원 노비의 양상」, 『민족문화논총』 79, 민족문화연구소, 2021, 291~326쪽.
- \_\_\_\_\_, 「조선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金容晚,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集文堂, 1997.
- 김의환, 「17~19세기 진천 평산 신씨의 노비 소유와 노비의 존재양상」, 『韓國學論叢』 4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217~253쪽.
- \_\_\_\_\_, 「영주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건립과 퇴계 이황 제향의 의미」,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188~189쪽.
- 김형수, 「임란직후 상주 지역질서의 재편과 存愛院」, 『국학연구』 30, 한국국학진흥원, 2016, 451~483쪽.
- 김호, 「16~17세기 조선의 지방 醫局 운영-경북 영주의 濟民樓를 중심으로」, 『국



- 학연구』 37, 한국국학진흥원, 2018, 391~432쪽.
- 도주경, 「조선후기 함경도 사노비의 존재양태와 국가 정책」, 『역사와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355~395쪽.
- 동양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역, 『(國譯)榮州三邑誌』, 소수박물관, 2012.
- 문숙자, 「16~17세기 兩班家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固城李氏 臨淸閣 分財記 분석을 통하여-」, 『고문서연구』 32, 한국고문서학회, 2008, 147~173쪽.
- 소순규, 「조선전기 공노비의 選上 入役 규정 연구」, 『민족문화연구』 90, 민족문화연구원, 2021, 195~226쪽.
- 신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 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강릉 약계(1603~1842)의 조직과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5, 한국사연구회, 2006(a), 1~29쪽.
- \_\_\_\_\_, 「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미암일기』, 『쇄미록』, 『이재난고』, 『흙영』의 비교 분석」, 『역사비평』 75, 역사문제연구소, 2006(b), 344~391쪽.
- 『榮州市史』 1~5,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 우인수,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료 기능」, 『대구사학』 104, 대구사학회, 2011, 99~132쪽.
- 이광우, 「17세기 어느 校奴婢 일가의 奴婢訟을 통해 본 몇 가지 사회상」, 『영남학』 70, 영남문화연구원, 2019, 47~81쪽.
- 이기복, 「의원의 서사로 본 조선 후기 의료의 사회문화적 풍경」, 『한국문화』 9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265~305쪽.
- 이혜정,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임학성, 「18세기 중엽 沙斤道 소속 驛人의 직역과 신분-1747년 “沙斤道形止案” 자료의 분석 사례-」, 『古文書研究』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63~86쪽.
- 임호민, 「조선시대 향촌조직 결성의 양상과 추이 고찰-강릉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사학』 27, 강원사학회, 2015, 93~121쪽.
- 장재천, 「조선시대 성군관 노비들의 상벌 고찰」, 『한국 사상과 문화』 99, 한국사상문화학회, 2019, 91~112쪽.
- 제민루보존회, 『濟民樓志』, 느티나무, 1996.

## The circumstance of slaves in Jeminru of Youngju in the 18th century

Kim, Young-na

This paper attempted to reveal various aspects of slaves belonging to Jeminru, a local member of Yeongju, using “Local public hospital slave register(醫局奴婢案)”.

The number of slaves gradually increased to 45 in 1728, 46 in 1774, and 59 in 1785. The distributed age group between the ages of 16 and 60 contributed the most to Jeminru.

Most of the marriages of slaves were between female slaves(婢) and unknown, and there was one marriage between the male slaves(奴) and female commoners(良女) in each slave register. Slave’s family belonging to Jeminru continued because they were not subject to inheritance.

The slaves lived in such as Yeongju, Yeongyang, Bonghwa, Sunheung, Andong, and Punggi in northern Gyeongsang Province, Yeongwol in Gangwon province. The reason why slaves lived a lot in Yeongwol may have been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medicinal herbs.

This paper looked at the size and age of the Jeminru slave, marriage, family, and residential area. The slaves of Jeminru would have been provided by the state, local officials, and the Sajok. Therefore,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Jeminru slaves, it can be seen that the appearance of family is similar to that of public slaves(公奴婢), and the

appearance of slave trade is similar to that of private slaves(私奴婢).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slaves belonging to local public hospital have both the character of public slaves(公奴婢) and the character of private slaves(私奴婢).

**keywords :**

Jawminru(濟民樓), Slaves(노비), Local public hospital slave register(醫局奴婢案), Marriage, Family, Residential areas

